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기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068
----------	-------

발의연월일 : 2025. 9. 17.

발 의 자 : 이훈기 · 김문수 · 박지원
김승원 · 박해철 · 김남근
김 윤 · 이재관 · 이병진
이주희 · 황명선 의원
(11인)

제안이유

공공데이터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데이터 경제의 핵심 자원으로 그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혁신적인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현행법 제정 이후 10여 년의 정책환경 변화에 맞춰 공공데이터에 관한 법제의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에 한정된 현행법의 규율 범위를 공공데이터의 생애 전반으로 확장하고, 공공데이터의 생성 단계부터 보존까지 공공데이터 정책 전반에 관한 공공기관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함.

또한,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제·개정되지 않도록 법령 제·개정 시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

도와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가명처리 등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 의무,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민의 공공데이터 이용권을 확대함으로써 민간에서 새로운 부가가치와 서비스가 창출되는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법률의 목적에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데이터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법률임을 명확하게 함(안 제1조).
- 나. 공공데이터의 생성·취득·저장·가공·보존 단계를 포괄하는 “공공데이터의 관리” 개념을 신설함(안 제2조).
- 다.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함을 책무로 규정함(안 제3조).
- 라. 공공데이터 개방을 저해하는 법령이 생성되지 않도록 법령을 제·개정할 경우 거쳐야 하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제도를 신설함(안 제6조의2).
- 마. 민간협력을 통한 데이터의 생성·취득 및 제공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5조).
- 바.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단계부터 기계판독성을 확보하도록 하며, 원천데이터 형태로 등록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규정하는 등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하는 때에 준수해야 하는 사항

을 규정함(안 제17조).

사.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방 효과가 큰 고품질·고가치 공공데이터를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함(안 제19조의2).

아. 제2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확인된 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요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목록을 제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공목록에서 제외된 대상과 사유 등 주요 사항을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안 제20조).

자. 공공기관이 별도의 데이터 제공 포털 등을 구축·운영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이 경우 개별 포털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 포털과 최신성·정확성·상호연계성을 유지해야 함을 규정함(안 제21조).

차. 공공데이터의 품질을 확보하고 공공기관의 체계적인 품질관리의 내재화를 위하여 공공데이터 품질 인증 제도를 도입하고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함(안 제22조의2).

카.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하여 제공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를 원천데이터로 제공하기 곤란한 경우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확인하여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안 제26조의2).

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내역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이용가치가 있는 공공데이터의 관리권을 공공데이터활용지원 센터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의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공”을 “제공, 관리”로 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생산”을 “생성·취득”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공공데이터 관리”란 공공데이터의 생성, 취득, 저장, 가공 및 보존을 말한다.

제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을 “공공데이터 기본계획”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공공데이터 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제4호 중 “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을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으로,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를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중장기 제공계획에”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를 “공공데이터와”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등을 검토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③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을 각각 “공공데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공”을 “제공,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공형태”를 “관리”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공기술”을 “표준 및 기술”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제공”을 “관리·제공”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을 각각 “공공데이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제공”을 “제공, 관리”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중 “제공 운영실태”를 “운영실태”로 하고, 같은 조 제1

항 중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을 “제공,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데이터 제공”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리 및 이용 활성화”로 한다.

제10조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공공데이터”로 한다.

제11조 중 “제공정책”을 “정책”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공공데이터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정책”으로,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공공데이터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공공데이터책임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을 “공공데이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을”을 “제공,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공공데이터책임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공”을 “제공, 관리”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제공”을 “제공, 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위한”을 “공공데이터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과”를 “공공데이터와”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공형태”를 “관리형태”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의2 및 제1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

설하고, 같은 항 제17호 중 “제공”을 “제공, 관리”로 한다.

4의2. 제13조의2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14의2. 제25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의 확보 지원

15의2. 제28조의2에 따라 활용지원센터에 이관된 공공데이터의 관리
제1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리”로 하
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을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을
“공공데이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제공”을 “제공, 관리”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기반 조성”을 “공공데이터 생
성, 취득 및 등록”으로 한다.

제25조를 제13조의2로 하고, 제17조를 제25조로 하며, 제3장에 제17조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공공데이터의 생성·취득 시 준수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
공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취득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한 때의 원천데이터
형태로 등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대통령령”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데이터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한다.

제19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을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요건”으로 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 이용자가 중점개방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

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점개방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제2호 중 “제17조”를 “제2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를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제외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목록 제외 대상과 사유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포털이 아닌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

이터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터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22조제3항 중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로 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품질인증)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적정한 품질수준 확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심사를 통한 품질인증(이하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
2. 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체계
3. 공공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체계
4. 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절차·심사방법·유효기간 등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제1항제1호 중 “제공형태 및 제공기술”을 “제공·관리의 형태·기술”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공을”을 “제공과 관리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공”을 “제공, 관리”로 한다.

2의2. 공공데이터 표준용어

제24조제3항 중 “제1항”을 “제19조의2, 제1항”으로 한다.

제26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6조의2(공공데이터의 적극적 제공)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데이터 진위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 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
- ③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제3항 중 “제17조”를 “제25조”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의를 결정하기”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이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폐지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해당 공공데이터의 내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관리를 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보존과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보존과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제1항 중 “제공중단”을 “제공중단(과도한 이용요건 부과, 데이터의 일부 제공을 통한 사실상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을 포함한다)”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제1항 중 “하게 할”을 “위하여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게 할”로 한다.

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38조제2항 중 “제17조”를 “제25조”로, “제26조”를 “제26조, 제26조의2”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시효중단의 효력에 관한 적용례) 제32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청된 분쟁조정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데이터의 <u>제공</u> 및 그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공 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을 보 장하고, 공공데이터의 민간 활 용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국 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 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제공</u> , <u>관리</u> ----- ----- ----- ----- -----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공공데이터”란 데이터베이 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 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 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 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 ----- ----- ----- ----- -----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나. -----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 중 공공기관이 <u>생산한 정보</u> 다.·라. (생략) 3. (생략) <u><신설></u> 4. (생략) 제3조(기본원칙) ① ~ ⑤ (생략) <u><신설></u>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전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7조에 따른 <u>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u> 및 제8조에 따른 <u>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u>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 3의2. (생략) 4. <u>제19조에 따른 제공대상 공</u>	----- -----<u>생성·취득</u>----- ----- 다.·라.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3의2. “<u>공공데이터 관리</u>”란 <u>공공데이터의 생성, 취득, 저장, 가공 및 보존을 말한다.</u> 4. (현행과 같음) 제3조(기본원칙)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u>공공기관은 이 법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에 있어 국민의 의견을 존중하고 국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제6조(전략위원회의 기능) ① ----- ----- -----. 1. -----<u>공공데이터 기본계획</u>-----<u>공공데이터 시행계획</u>----- ----- 2. ~ 3의2. (현행과 같음) 4. <u>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u>
--	--

공데이터 목록의 심의·의결
및 목록 공표에 관한 사항

5. (생략)

6.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
에 관한 사항

6의2. ~ 8. (생략)

② (생략)

<신설>

-----가운데 제공대상
이 되는 공공데이터의 중장기
제공계획에-----

5. (현행과 같음)

6. 공공데이터와-----

6의2. ~ 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의2(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공공데이
터의 제공, 관리 및 이용에 관
한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
경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
관에게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등에 대한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이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저해하는지 등을 검토
하고,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개선을 권고

	<u>할 수 있다.</u>
	<u>③ 공공데이터 제공·이용 저</u>
	<u>해요인 평가의 방법·절차 등</u>
	<u>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u>
	<u>로 정한다.</u>
제7조(<u>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u>	제7조(<u>공공데이터 기본계획</u>) ① -
<u>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u>)	----- <u>공공데이터</u> -----
① 정부는 <u>공공데이터의 제공</u>	-----
<u>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u>	-----.
<u>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u>	
<u>을 수립하여야 한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③ -----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공공데이터 <u>제공</u> 및 이용 활	1. ----- <u>제공, 관리</u> -----
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

2. 공공데이터의 <u>제공형태</u> 및	2. ----- <u>관리</u> -----
제공방안에 관한 사항	-----
3. ~ 6. (생략)	3. ~ 6. (현행과 같음)
7. 공공데이터의 <u>제공기술</u> 개발	7. ----- <u>표준 및 기술</u> -----
촉진에 관한 사항	-----
8.·9. (생략)	8.·9. (현행과 같음)
10. 공공데이터 <u>제공</u> 및 이용에	10. ----- <u>관리·제공</u> -----
필요한 투자 및 재원조달 계	-----
획	-----
11. (생략)	11. (현행과 같음)

④ · ⑤ (생략) 제8조(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전 연도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성과평가 2. ~ 4. (생략) ④ (생략) 제9조(공공데이터의 제공 운영실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공공기관(국회·법원·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조성, 제공현황 등 제공 운영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	④ · ⑤ (현행과 같음) 제8조(공공데이터 시행계획) ① - ----- -----공공데이 터----- -----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제 공, 관리-----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9조(공공데이터의 운영실태 평가) ① ----- ----- ----- -----제 공, 관리 및 이용 활성화 등--- ----- -----.
---	---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이나 공공데이터 제공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정부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민, 민간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수요, 이용현황,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효율적인 공공데이터 제공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①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리 및 이용 활성화-----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공공데이터의 이용현황조사 등) -----공공데이터-----

-----.

제11조(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정책-----

-----.

제12조(공공데이터책임관) ① ---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이라 한다)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하고 이를 이용자가 알기 쉽게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②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1. 2. (생략)
3.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
4. (생략)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

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공공기관은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지원을

-----정책-----

-----공공데이터책임관-----

② 공공데이터책임관-----

1. 2. (현행과 같음)

3. 공공데이터-----

4. (현행과 같음)

5. -----제공, 관리 및 이용 활성화-----

③ -----공공데이터책임관-----

④ -----제공, 관리-----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으며, 이 경우 전담하는 조직은 제13조에 따른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에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공공데이터의 효율적인 제
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
하여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이하 “활용지원센터”라 한다)
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
2조에 따른 한국지능정보사회
진흥원에 설치·운영한다.

② 활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을 위한 정책 및 제도의 조사
· 연구

2.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과 관련한 통계의 조사·분석

3.·4. (생략)

<신설>

5. ~ 6의2. (생략)

7. 제17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
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

-----.

제13조(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

① -----제
공, 관리-----

-----.

② -----
-----.

1. 공공데이터 관련-----

2. 공공데이터와-----

3.·4. (현행과 같음)

4의2. 제13조의2에 따른 공공데
이터 관련 교육·훈련

5. ~ 6의2. (현행과 같음)

<삭제>

성화를 위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 지원

8. ~ 12. (생략)

13. 제24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
안 구축 지원

14. 제25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관련 교육·훈련

<신설>

15. (생략)

<신설>

16. (생략)

17.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효율
적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에 필요한 사항

③ ~ ⑤ (생략)

제25조(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훈련) (생략)

제15조(민간협력) 공공기관의 장
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과 협력하여 관련 서비

8. ~ 12. (현행과 같음)

13. -----

--관리형태-----

<삭제>

14의2. 제25조에 따른 저작권
등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당
한 이용허락의 확보 지원

15. (현행과 같음)

15의2. 제28조의2에 따라 활용
지원센터에 이관된 공공데이
터의 관리

16. (현행과 같음)

17. -----

---제공, 관리-----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의2(공공데이터 관련 교육
· 훈련) (현행 제25조와 같음)

제15조(민간협력) ① -----

-----공공데이터의 제공, 관리-----

스를 제공할 수 있다.

<신 설>

제16조(국제협력) 공공기관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다음 각 호에 관한 국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 ~ 4. (생략)

5.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제3장 공공데이터 등록 등 제공
기반 조성

<신 설>

ㄱ.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협력을 위하여 개인 및 기업, 단체 등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국제협력) -----공공데이터-----

1. ~ 4. (현행과 같음)

5. -----제공, 관리-----

제3장 공공데이터 생성, 취득
및 등록

제17조(공공데이터의 생성·취득 시 준수사항)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기계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생성·취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생성·취득한 때의 원천데이터 형태로 등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소관 공공데이터 목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 ③ (생략)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와 제공 및

③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거나 신규로 구축하는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때에는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기술적으로 분리하여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데이터 목록의 등록)

① -----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데이터 관리체계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대통령령-----

-----.

② · 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이용 활성화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공공데이터 포털에 공공데이터목록등록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① 전략위원회는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을 심의·의결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공공데이터 제공목록 및 이용요건 등을 종합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신 설>

제19조(공공데이터 목록정보의 공표) <삭 제>

② -----제18조에 따라 등록된 공공데이터 목록 가운데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목록 및 이용요건-----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의2(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공대상이 되는 공공데이터 중 이용수요와 사회적·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제공의 효과성·시급성이 높은 공공데이터를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중점개방데이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해당 공공데이터를 목록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생략)
2. 법률 제정·개정, 업무 변경 등의 사유로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게 된 경우
3. (생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우 이용자가 중점개방데이터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중점개방데이터의 제공 및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그 밖에 중점개방데이터의 지정·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공공데이터 목록의 제외)

① -----

-----.

1. (현행과 같음)
2. -----
-----제25조-----

3. (현행과 같음)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u>제1항에 따른 공공데이터 목록 제외 요청을 전략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에 따라 제외할 수 있으며, 전략위원회가 제외하는 것으로 결정한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u> ③ (생략) <u><신설></u>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해당 공공데이터의 목록을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목록 제외 대상 및 그 사유를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하여야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표한 목록 제외 대상과 사유의 주요 사항에 대하여 매년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① . ② (생략) <u><신설></u>	제21조(공공데이터 포털의 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의 공공데이터포털이 아닌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 데이터 포털이나 데이터 플랫폼 등에서 제공하는 공공데이

③ (생략)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 ② (생략)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제
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사회적
·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제공
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한 품질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
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④ (생략)

<신설>

터는 공공데이터포털과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
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2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공공데
이터-----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의2(품질인증)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제22조에 따른 공공
데이터의 적절한 품질수준 확
보와 제공 촉진을 위하여 공공
기관의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전반에 관한 심사를 통한 품질
인증(이하 “공공데이터 품질인
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u>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체계</u> 2. <u>공공데이터 표준관리 체계</u> 3. <u>공공데이터 구조 및 연계데이터 관리체계</u> 4. <u>그 밖에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하다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u>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u>기준·절차·심사방법·유효기간 등 공공데이터 품질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데이터 표준과 관련된 사항이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으로 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공데이터의 <u>제공형태 및 제공기술</u>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① ----- ----- ----- ----- ----- ----- ----- ----- ----- ----- 1. -----<u>제공·관리의 형태·기술</u>

2. 공공데이터 <u>제공</u>을 위한 분류체계 <u><신 설></u> 3.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u>제공</u>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생 략)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 ② (생 략) ③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형태 정비 및 제공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생 략)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 ③ (생 략) <u><신 설></u> ④ (생 략) <u><신 설></u>	2. -----<u>제공과 관리</u>----- 2의2. 공공데이터 표준용어 3. -----<u>제공, 관리</u>-----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공공데이터의 제공기반 구축)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9조의2, 제1항----- ----- ----- ----- ----- ----- 제25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26조(공공데이터의 제공)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데이터를 비용 또는 그 밖의 사용에 제약 없이 최소 하나 이상의 소프트웨어로 처리할 수 있는 형식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26조의2(공공데이터의 적극적
---	---

	<u>제공)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가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공공데이터 진위 확인 등의 방법으로 해당 데이터의 일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u> <u>② 공공기관의 장은 개인정보가 포함된 공공데이터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가명처리할 수 있으며, 가명처리된 공공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다.</u> <u>③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제공을 위하여 안전하게 데이터를 분석·활용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 ② (생략)	제27조(공표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공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데이터가 제17조제1항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여 요청을	③ ----- ----- -----제25조----- ----- -----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 ⑥ (생략)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생략)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목록 제외 요청을 한 경우 전략위원회의 심의·의결 전에 제공중단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신설>

-----.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28조(공공데이터의 제공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외를 결정하기-----
-----.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28조의2(제공대상 공공데이터

의 이관) ① 공공기관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폐지 등으로 공공데이터포털에 연계·제공하는 공공데이터를 계속 관리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와 해당 공공데이터의 내역을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해당 공공데이터를 계속 제공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공데이터의 관리를 활용지원센터로 이관하도록 요청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
관의 공공데이터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에 관한 분쟁조정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
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데이
터의 제공 거부에 대한 조정을
하게 하기 위하여 전략위원회
에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
다)를 둔다.

② ~ ⑨ (생략)

<신 설>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
부장관은 공공데이터의 보존과
이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보존
과 이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회의 설치 및 구성) ① -----

제공중단(과도한 이용요건 부
과, 데이터의 일부 제공을 통한
사실상 제공거부 및 제공중단
을 포함한다).-----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0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분쟁조정위원회의 위
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업무에 관하여 「형법」 제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행정안전
부장관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
여금 제31조제1항에 따라 신청
된 사건의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 ⑨ (생략)

<신설>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생략)

② 각 공공기관의 장은 제17조

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
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32조(분쟁의 조정) ① -----

-----위하여
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
청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게 할-----.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32조의2(소멸시효의 중단) ①

제31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다만, 신청이 취하되거나
각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②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
우에는 그 불성립이 확정된 날
부터 1개월 이내에 소(訴)를 제
기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제38조(권한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25조

제3항, 제22조, 제24조, <u>제26조</u> 및 제27조의 내용에 관하여 활 용지원센터에 그 업무를 위탁 할 수 있다.	----- <u>제26</u> <u>조, 제26조의2</u> ----- ----- -----.
---	---